

2015 TIP Report Questions

2015년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까지의 한국정부의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노력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그리고 형집행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TVPA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최소기준에 따라,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증거로, 특별히, 인신매매와 연관이 있는 범죄에 연류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그리고 형집행에 관한 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발행되는 사기성 비자나 여권, 법집행을 방해하게 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건네는 제보;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가 받는 뇌물; 그리고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함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기소는 대체적으로 국가별 인신매매 등급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해 이후 대한민국 인신매매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인신매매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신매매 범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근원지, 도착지나 환승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능하다면, 예를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시민이든 아니든 강제적 또는 담보된 노동, 강제구걸이나 강요된 범죄행위 (예를들어, 마약밀수), 법원에서 내린 유죄판결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교도소에서의 노동 및 성적 인신매매 (제 3 자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매춘을 포함) 등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인신매매 피해자가 모집되거나 그들을 착취할 목적으로 데려가는 국가/지역이 달라졌습니까?

⇒한국이 IT 강국인 만큼, 인터넷을 통한 그루밍(grooming)이 팽배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가해자들은 가출 청소년 등 재정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그들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있다. 2013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나타났다.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방, 성인 PC 방, 변태마사지, 유리방, 휴게텔, 대딸방, 귀청소방,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는 2010년 2,068 건에서 2014년 7월까지 3,620 건으로 증가했다.

2) 성적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자들로 확인된 그룹에 변화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예를들어, 부녀자, 소년.소녀, 특정 민족집단, 망명자, 국내실향민, 이주자, 장애인, 무국적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등)

⇒ 청소년 '가출팸'의 경우 소녀들의 성매매를 동반한다.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수가 많은데, 이들은 가출팸으로 함께 모여서 이동하면서 숙박하거나 생활한다. 이때 여성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가출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내의 소녀들이 성인대상 성매매의 피해자가 된다.

6)이 보고기간 동안, 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에 있어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어떤 분야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6 호와 7 호는 각각 '피해 아동 청소년'과 '대상 아동 청소년'을 구분짓고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도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9) 새롭게 조사된 인신매매 건 수. 최종적으로는 비 인신매매 죄명으로 기소된 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주목할만한 수사 건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2014년 1월~8월 전국 성매매사범 기소 건수는 4822 건, 2014년 1월~9월 전국 성매매알선 사범 기소 건수는 3884 건이다.

14)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근거로 한 인신매매 케이스에 있어, 피고의 절차를 밟을 권리를 보호하는 진행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2014년 11월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성매수자를 가장해 수사를 체포하려고 하여 성매매 여성이 건물 밖으로 투신하여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다. 법령상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도 포함된다.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 경찰 내 성매매 수사를 위한 전담체계가 없다는 점, 경찰이 성매수자나 알선업자 위주가 아닌 성매매 피해 여성 위주로 단속하는 부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16) 인신매매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과 관련 하여 (외교관과 평화유지군 포함), 특히
1) 이러한 공무원이나 기관의 연루행위 혐의와 2) 이러한 혐의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인신매매를 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이를 용의하게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있었습니까? 공직자간에 특정 인신매매 유형의 연루가 얼마나 퍼져있으며 그들이 속한 기관의
리더십들이 이를 옹호합니까?. 한국에 배치된 외국 외교관의 성적 인신매매 혹은 노동착취
인신매매 범죄와 연관된 주장이나 기소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도 알려 주십시오.
(예를들어,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그들의 자국민 가사도우미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 1) 성매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전에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손모 경위,
마포경찰서 소속 전모 경위가 구속 기소되었다. 2) 서울중앙지검 특수 4 부 (출처 :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1/02/16408751.html?cloc=olink|article|default>)

31) 이 보고기간 중,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외에서의 아동성관광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약 아동 성매매를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확인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성매매 여행객들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부는 몇 명의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을
기소하거나 본국으로 추방/인도 하였습니까? 만약 해당국의 국민이 아동성관광의 범죄자인
경우, 해당국의 아동학대법은 해외에서 저지른 성관광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역외
조항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보고기간 중, 아동성매매 관광을 하고자 여타 국가로
여행한 혐의로 이 조항 아래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국 국민은 몇 명입니까?

⇒ 경찰청의 해외성매매사범 검거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성매매 알선자 45명,
성매수자 22명, 그리고 보다 많은 수치인 성매도자 58명이 검거되었으나 구속조치는 2명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골프관광, 스포츠 동호회 등의 형태를 가장하여 계획적으로
아동성관광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탁틴내일은 해당 위원회 의원에게
해외아동성매매와 관련하여 질의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해외주재관들을
활용한 수사방법 개발의 필요성 언급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착취에 의해 태어나고 버려진
한국인 2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동남아지역 ODA 사업 예산이 2015년 증액되었다고
답했다.

*참고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 33 조 -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 3 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